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 2003. 11. 20.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3. 12. 6.

라. 상정일자 : 2003. 12. 10.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마. 의안번호 : 제 2003 - 70호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기금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3.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단위:천원)

| 구 분 | 2003년말 현 재 액 | 2004년 운용 | | | 2004년말 계 획 액 |
|--------|-----------------|----------|-----|--------|-----------------|
| | | 수 입 | 지 출 | 증 감 | |
| 합 계 | 495,603 | 85,004 | 0 | 85,004 | 580,607 |
| 재해대책기금 | 394,596 | 68,043 | 0 | 68,043 | 462,639 |
| 재난관리기금 | 101,007 | 16,961 | 0 | 16,961 | 117,968 |

4.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 재해대책기금

- 재해예방 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지방 보통세 징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이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계상되었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94,596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67,043천원, 이자수입 1,000천원을 적립 운용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없음.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 1999년과 2002년도에 사용한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 재난예방 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 56조의 규정에 지방 보통세 징수 결산액 최근 3년간 평균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운영하는 기금이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1,007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6,761천원, 이자수입 200천원을 적립 운용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 해당없음

7.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 : 해당없음